

PCT의 發効展望과 業務概要

—加盟效果性測定이 前提—〈下〉

—前號에서 계속—

3. PCT加盟의 效果

① 産業人에의 利點

(1) 言語의 障壁을 緩化

英·日語등을 包含해서 國語의 出願이 可能하며 國力이 伸張되던 特許廳이 國際調查機關으로 指定 될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출원을 위한 言語의 障壁도 크게 緩化될 것이다.

(2) 方式에 관한 勞力의 節減

方式의 統一에 따라 出願先國마다 配慮하는 방식의 煩雜이 解消된다.

(3) 節次上 特許管理에 便利

파리條約에 比하여 8個月의 여유가 있어 發明이 經濟的이고 技術的評價가 正確할 수 있으며 企業化의 豫測, 出願先國의 選定등이 確實해진다.

(4) 國際調查報告의 이용에 따른 特許可能性判斷 等の 確實化

(5) 外國出願費用의 節減, 效果의 使用

(6) 國際公開公報의 이용에 따른 특허관리의 容易化 經營方針決定, 技術開發 등을 위한 특허조사 的 容易化, 最新技術情報蒐集의 容易化

② 特許廳으로서의 利點

(1) 審査의 效率化

외국에서의 國際出願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의 이용

(2) 審査負擔의 輕減

국제조사보고의 效用으로서 期待되는 외국으로부터의 국제출원의 取下可能

③ 國家的인 利點

(1) 技術立國으로서의 基盤擴充 즉 외국출원의 용이화에 따른 외국출원의 助長, 正當한 外國特許 取得의 增大, 技術輸出, 技術交流의 擴大

(2) 特許制度 國際化에의 寄與

4. PCT와 國際情勢

① PCT의 發効要件

8個國이 批准書 또는 加入書를 寄託한 후 3個月만

에 發効하게 되나 28개국 중에서 4개국은 다음의 條件 가운데 어느 한조건이 具備되어야 한다.

(1) 그 나라의 出願件數가 年間 4萬件 以上일 경우

(2) 그 나라의 國民, 居住者가 年間 1千件을 1個 外國에 출원했을 경우

(3) 그 나라에 外國인이 年間 1만건 이상을 出원 할 경우

② 最近의 狀況

많은 나라가 批准하고 있으나 特許大國으로서는 1975年 11월에 美國, 1976年 7월에 西獨, 1976年 10월에 英國이 비준함으로써 앞으로 프랑스나 日本등이 비준하면 自動發効하게 된다. PCT의 主要加盟 國은 歐美圈에서는 美·英·佛·伊·加·네덜란드·西獨·瑞典·벨지움·西瑞등이고 그외는 濠洲·蘇聯·日本과 아프리카 8개국 등이다. 〈完〉 (C記)

PCT概略說明圖 (國際手續審查는 除外)

